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청원

I. 개정내용

1. 개정안의 주요골자

-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수를 20세이상의 주민 100인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구성에 위원의 인원을 11명으로 확대하고, 공익단체인 시민단체 인사 등의 참여 비율을 넓혀야 함.

2. 개정안 전문

제2조의 1 【감사청구 주민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100인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구성】 ①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부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적 위원으로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수,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3. 충청북도의회 의원 2인
4. 공익적 시민단체 관계자 2인 이상

條文對比表

現行	改正案
<p>제2조의 1 【감사청구 주민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000분의1이상으로 한다</p> <p>②제1항의 감사청구 주민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p> <p>제3조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구성】</p> <p>①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부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②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장급이상공무원, 감사관 2.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3.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p>제2조의 1 【감사청구 주민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100인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3조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구성】</p> <p>①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부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적 위원으로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수,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3. 충청북도의회 의원 2인 4. 공익적 시민단체 관계자 2인 이상

II. 개정이유

1. 필요서명수 상한

○ 지방자치법이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필요서명수의 상한을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규정한 것은 지역에 따라 20세 이상의 주민총수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1/50을 넘어서 더 많아지면 안된다는 의미로 얼마든지 최소청구인수를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와 같이 1/1000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경우 최소청구인수가 1050명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실제 주민들의 감사청구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 지방행정과정에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시정하여 지방행정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양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총수의 몇 분의 1 과 같이 필요서명수의 상한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주민참여의 활성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최소청구인수를 100명 정도로 대폭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심의위원 증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적 시민단체의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참여 확대

○ 주민감사청구제는 기존 행정기관의 자체감사가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식적인 주민참여 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 청구를 심의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는 시민이어야 하며, 감사심의위원회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감사청구를 심사할 심의위원회 구성에 이러한 점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자치단체장의 주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심의 위원수가 9명으로 작아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이며, 도의원이나 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의 참여 비율이 낮고, 외부인이라 해도 전직공무원들이 대부분인 상태로 제도와 운영상의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로 충청북도의 경우 현재까지 단 한건의 주민감사청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 점차적으로 효율적인 주민참여를 위하여 시민단체 등 공익단체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실제 우리지역에서의 주민참여는 이러한 단체의 활동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가입이 개방되어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일정비율 이상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공익을 추구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단체와 같은 공익단체도 법률 개정을 통해 감사청구주체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일정비율 이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예로 광주 광역시의 경우 11인의 심의위원 중 2인에 한하여 시민단체 대표자 또는 추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 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자치의 꽃'이라 할 만큼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참정권을 높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미비와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조례 제정으로 아쉽게도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충북지역 12개 시민단체'는 청구인수를 대폭 완화하고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 공익적인 시민단체의 참여를 포함시키는 개정 청원안을 제출하오니, 깊이 숙고하시어 참다운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기여하는 조례개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청원소개의견서

청원건명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청원		
청원인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천동 1371 충북첨여자치시민연대	
	성 명	노 명 우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한 현 태 인		
소개년월일	2002년 2월		
소개의견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시민단체 청원 소개		

1. 지방자치법이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필요서명수의 상한을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것은 지역에 따라 20세 이상의 주민총수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1/50을 넘어서 더 많아지면 안된다는 의미로 얼마든지 최소청구인수를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와 같이 1/1000범위 안에서도 조례를 정할 경우 최소청구인수가 1050명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실제 주민들의 감사청구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2.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구성에 시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감사청구를 심의하고 감사를 진행할 주체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안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충청북도 심의위원회는 도의원조차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참여는 더더욱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중 일정비율은 공익적인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지방자치가 주민의 직접 참여와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누구나 이 제도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절차가 간단해야 하며, 또한 이 제도의 이용도를 제고하는 의미에서 감사청구 심의위원회의 신뢰도 향상과 감사청구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4. 이에 본 의원은 이상의 조례가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청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 원 서

피청원인 : 충청북도의회

제 목 :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1(감사청구 주민수) 및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개정 청원

1. 청원취지

- 현재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1(감사청구 주민수) 및 제3조(감사청구심의위원회 구성)는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제재하는 성격이 강한바, 입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3조 3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에 관한 규정과 제13조 4 주민의 감사청구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공포하여 200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의 권리보호라는 목적하에 주민참여를 실현시키는 장치로 지역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견제와 감독의 수단을 확보하고 이미 제도화된 여러 형태의 행정통제방식의 결합으로 발생되는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행정 수행 과정상의 각종 문제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수단이 되는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누구나 이 제도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절차가 간단해야 하며 또한 이 제도의 이용도를 제고하는 의미에서 감사청구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 이에 충북지역12개 시민단체는 정책과정과 주민간에 단절되어 가는 관계를 복원시켜 주민의 행정접근성을 용이하게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을 위한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2002. 2.

청원인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외 11개 단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1)

수 신 : 충청북도의회 의장

제 목 : 충청북도주민감시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청원

위의 청원을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끝.

청원자(대표)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1번지(전화: 267-0151)

성 명 : 노영우(충북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인)외 11 단체

소개의원(대표) : 한 현 태(충청북도의회 의원) (인)

첨부서류

조례개정 공동 청원 12개 단체

청주경실련

청주환경연합

충북연대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충주·음성·괴산 환경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민예총

청주여성의 전화

충북여성민우회

청주YWCA